

2023. 4. 10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1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

안전수사대장	이 이 동	2133-8807
식품안전수사팀장	김 진 순	2133-8900
담 당 자	이 범 일	2133-8931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s://news.seoul.go.kr/safe/public_cop_intro">https://news.seoul.go.kr/safe/public_cop_intro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2쪽

### 서울시, 봄철 관광지·공원 불법식품 특별수사

-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공원·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자 대상
- 위해식품 등 판매는 「식품위생법」 등에 따라 처벌
- 범죄행위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

※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관광지·공원 주변에 대하여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.
  -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.
  - 이에 따라 유해한 음식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이번 수사를 기획하였다.
- 서울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, 경복궁, 창덕궁, 남산 한옥마을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공원(유원지, 산둘레길, 도시자연공원) 주변 등에서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.

- 수사대상은 ▲무허가, 무신고 영업 ▲원산지 거짓, 혼동표시 ▲소비기한(유통기한)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분·운반·진열·보관하는 행위 등이다.
- 한편, 작년 봄철(4월~5월)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8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.
  - 위반내용은 ▲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41건 ▲원산지 거짓표시 8건 ▲미등록 축산물판매업 영업 8건 ▲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이다.
-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타인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. 관련 범죄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.

〈 형사처벌 적용법조 〉

-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(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  - 원산지 거짓, 혼동표시 등 (법 제6조 제1항·2항 위반)
- 식품위생법 제97조 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)
  - 미신고 영업, 소비기한(유통기한) 경과제품 판매 등(법 제37조 제4항, 법 제44조 제1항 위반)

-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해식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·제보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.
  -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·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.

접속방법	접수채널	신고 방법
스마트폰앱	서울 스마트 불편신고	① '서울 스마트 불편신고' 앱 다운로드 →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→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법신고로 변경 → ④ 신고내용 작성
서울시 누리집	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	① 서울시 누리집( <a href="http://www.seoul.go.kr">www.seoul.go.kr</a> ) 접속 → ② 분야별 정보 '안전' 클릭 →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→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
전화	120 다산콜재단	① 전화번호 120 누름 → ② 범죄 신고

-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“서울시에서는 위해 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꾸준히 수사해 나가겠다.”며 “시민들께서도 위해 식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